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. .	
연월일	(제 회)	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

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224호, 2021.6.8. 공포, 2021.12.9. 시행)되어 조기치료비 지원(법 제11조) 및 응급입원 비용부담(법 제80조)에 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지원 대상과 그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(안 제5조의2 신설)

- 1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인 환자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
- 2) 지원대상 정신질환과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
- 3)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

- 4)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
 - 5) 신청을 받는 보건소장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
- 나. 응급입원 관련 비용의 부담(안 제37조 제4항, 제5항 및 제6항 신설)
- 1)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
 - 2)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
 - 3) 신청을 받는 보건소장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기 조치(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'21년 42억)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진행 예정
3) 규제심사 전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인 환자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② 지원대상 정신질환은 「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」 중 정신 및 행동장애의 코드명을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,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「의료급여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
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

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

다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마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

④ 조기치료비 지원 관련 지원한도액,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
⑤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의 인적사항, 가족관계 및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조사·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치료비 지원관련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사람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이를 행한다.

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「의료급여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

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
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

다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마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

⑤ 응급입원 지원 관련 지원한도액,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
⑥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 또는 그 사람이 발견된 곳의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의 인적사항, 가족관계 및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조사·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치료비 지원관련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5조의2(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인 환자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.</u> <u>② 지원대상 정신질환은 「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」 중 정신 및 행동장애의 코드명을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,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달리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</u> <u>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「의료급여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5조 제1</u>

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 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

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5에 따른 자
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
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

다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
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분
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에
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
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
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
지급받는 사람

제37조(비용의 부담)

①~③ (생략)

<신설>

마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에

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

사람

④ 조기치료비 지원 관련 지원한도액,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
⑤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의 인적사항, 가족관계 및 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조사·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치료비 지원관련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사람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이를 행한다.

제37조(비용의 부담)

①~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「의료급여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도 지원할

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 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

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

다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 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마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에

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
람

⑤ 응급입원 지원 관련 지원한도액, 지
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
장관이 정한다.

⑥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의 주
소지 관할 보건소장 또는 그 사람이 받
견된 곳의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의
인적사항, 가족관계 및 소득·재산 등
에 관한 조사·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
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에
근거하여 치료비 지원관련 행정정보를
이용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	
연 락 처	(044)202 - 3864